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9. 백승아의원 등 51인

나. 회부일자 : 2024. 7.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6.)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25.)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5.)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백승아의원)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및 제30조의10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대훈)

가. 교육활동 등의 보호 안내 조항 신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관계 법률에 따른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4(교육활동 등의 보호 관련 안내)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및 그 지원 업무 수행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이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률에 따른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2. 제3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1년에 2,269건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035건, 2023년에는 5,050건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증가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 관계 법률에 따른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과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경우, 학생 및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숙지하여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숙지하여 해당 학교에 부합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내용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1)]

이와 같이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정기적으로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1)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견]

○ 교육부 -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안내: 신중검토 · 「교원지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따라 이미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원지위법」 등의 관련 조문이 개정안의 내용을 포섭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장의 의무를 또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내: 일부수정 · 개정안 제30조의10(학교 민원의 처리)에 별도의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용 가능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검토 - 제20조의4제1호와 유사한 규정을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두고 있으므로 중복입법 검토가 필요하며,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 「유아교육법」도 동시에 개정하여 유치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 유치원은 「학교폭력예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정 시 해당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학교 민원 처리 조항 신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이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10(학교 민원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4. 그 밖에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학교 민원의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민원처리법」에 근거하되 학교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민원 응대 매뉴얼(2024년 2월)」 등을 각급 학교에 배포하여 학교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교직원 보호 조치 등을 안내한 바 있음.

「민원처리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으로,[2)]

각급 학교는 「민원처리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이 법을 적용받고 있으나,[3)]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의 특성상, 학교의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4)]

이에 개정안은 학교 민원 처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이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2) **「민원처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 민원 처리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될 경우, 학교 민원과 관련한 절차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고,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각급 학교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개정시 고려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과 현행 「민원처리법」 중 내용이 유사한 부분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30조의10 중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 구축(제1항제2호)'은 현행 「민원처리법」 제12조의2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하고,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제2항)'은 현행 「민원처리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유사함.

다만, 현행 「민원처리법」에 더하여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현행 「민원처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30조의10 중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제1항제1호)',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제1항제3호)',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사항(제1항제4호)'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제30조의10제1항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육감이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우리부는 '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기관 단위로 민원에 응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음. • 이에, 민원 처리 방법·절차 등을 담은 '민원 대응 매뉴얼'을 기보급하였으며, '한눈에 보는 민원 응대 안내자료' 등 각종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학교 민원 대응체계가 체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학교 방문·상담 예약, 민원 처리를 위한 온라인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설 구축은 필요치 않으므로 해당 단어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교육부에서 보급한 민원 처리 방법·절차는 표준안으로 다양한 학교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학교 실정에 맞춘 민원 처리를 위해 학교 또는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학교 밀착형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 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해당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검토** - 제30조의10제1호의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은 매우 가변적이므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이 마련한 표준화 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가 오히려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모순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당 내용을 「민원처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초·중등교육법」으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민원처리법」의 행정규칙 등으로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 「유아교육법」도 동시에 개정하여 유치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 유치원은 「학교폭력예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정 시 해당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